

外國判決과 外國仲裁判定の 承認 및 執行

張 文 哲*

<目 次>

序 論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1. 意義
2. 各國의 立場
3. 外國判決의 意義
5. 外國判決의 執行
外國仲裁判定の 承認과 執行
1. 意義
2. 外國仲裁判定の 承認 및 執行의 問題點
3. 外國仲裁判定の 承認과 執行要件
4. 外國仲裁判定の 執行
結 論

I 序 論

한 국가에서 내려진 法院의 判決이나 仲裁判定이 타국에서 承認되고 執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섭외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법률문제이다. 外國判決과 仲裁判定の 承認 및 執行에 관해서는 각국이 조약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제적 협력도 있었으며 국내입법을 통해 이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왔다. 外國仲裁判定이나 外國判決이 司法正義의 實現

* 警察大 敎授, 法學博士,

(administration of justice)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外國判決의 承認 問題는 법원의 재판권행사가 주권문제인 점에 비추어 국제적 협력이 별로 미비한 반면, 外國仲裁判定의 承認에 관해서는 상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인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그들에 분쟁을 해결해왔던 관행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80여개국인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外國判決과 外國仲裁判定에 관한 국내입법체계가 성립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나 입법적 미비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인 보완책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II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1. 意義

裁判權을 국가주권의 한 요소로 본다면, 外國判決은 선고한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領土 밖에서는 效力 (extra-territorial effect)이 없으므로 外國判決의 承認은 承認國의 義務가 아니다. 그러나, 涉外的 去來가 비번해짐에 따라 涉外生活의 安定을 위하여 또는 自國判決도 外國에서 承認받기 위해서라도 각국은 國內法으로 一定한 要件을 갖춘 外國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시키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 소송에 있어서 破行的 法律關係를 防止하고 當事者 利益을 보호하며 국제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법률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으로는 현재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헤이그 國際私法會議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제정한 각 주제별 협약들과¹⁾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각국이 가입한 1968년 “民事 및 商事에 관한 裁判管

1) “未成年者 子女의 扶養義務에 관한 判決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協約” (Convention concerning the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Decision involving Obligations to Support Minor Children, 1958), “扶養義務에 관한 判決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協約,”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 1973), “入養에 관한 裁判管轄, 準據法 및 審判의 承認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of Decrees Relating to Adoptions, 1965), “離婚과 法定別居의 承認에 관한 協約”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Divorces and Legal Separations, 1970).

轄과 判決 執行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 1968) 등이 있다.

2. 各國의 立場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民事訴訟法 제 203조와 476조, 477조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日本 民事訴訟法 제 200조, 514조, 515조 또는 獨逸 民事訴訟法 제 328조, 722조, 723조와 그 취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相互保證條項과 관련하여, 獨逸 民事訴訟法은 외국판결이 非財産상의 請求이며 獨逸내에 裁判籍이 없는 경우에 相互保證을 요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판결에서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최근 각국은 嚴格한 相互保證主義을 완화하여 외국판결을 관대하게 승인하는 경향이다.

英國法은 전통적으로 國際禮讓說(doctrine of comity) 또는 義務說(doctrine of obligation)의 입장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였으며, 한때 상호보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도 있었다.²⁾ 義務說이란 英國法에 의하여 管轄權을 가진 외국법원이 내린 판결은 피고에 대해 어떤 義務를 부과하므로 승인국은 그 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의무는 외국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법에 의하여 관할있는 법원이 부과한 의무이며 외국판결에 대한 방어가능성도 英國法에서 정하므로 既得權說과는 다소 다르다.³⁾ 또한, 영국에서는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로서 영국에서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다시 새로운 판결을 얻어야 하였다. 그러나, 1920년 “法院行政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20)과 1933년의 “外國判決에 관한 相互執行法”(Foreign Judgments Reciprocal Enforcement Act, 1933)에 의하여 상호보증에 있는 특정국가의 외국판결을 英國法院에 登錄함으로써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였다.⁴⁾

한편, 美國에서는 傳統的으로 他州의 判決을 承認하는데 있어서 헌법상의 信賴와 信用條項(full faith and credit clause), 適法節次(due process), 公序의 原則(public policy)에 어긋나지 않는 한 관대하게 인정하여 왔으나,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하여는 相互保證主義를 엄격히 적용하곤 하였다. 聯邦最高法院은 Hilton v. Guyot(1895)에서 國際禮讓에 입각한 相互主義의 原則을 적용하여 문제의 外國判決을 내린 국가의 법이 상응하는 내용의 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법원도 그 외국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상호보증을 결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의

2) Morris, The Conflict Law (1984), p. 106.

3) Russell v. Smyth (1942) 9 M. & W. 810, 819 ; Williams v. Jones(1845) 13 M. & W. 628, 633.

4) Morris, op. cit, 108-109 ; 최공용, 國際訴訟(1988), 393면.

승인을 거부하였다.⁵⁾ 그러나, 이 원칙은 학자들에 의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各州의 법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州는 相互主義 原則을 거부하고 있으며, 몇몇 州만 原告 勝訴 判決에 대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⁶⁾ 그후 연방최고법원은 *Erie R. R. v. Tompkins* (1938) 사건에서 聯邦法院이 外國判決을 승인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法廷地法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현재 각주의 聯邦法院은 *Hilton v. Guyot*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7) 그 결과, 미국법원들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⁸⁾ 예를들면, *Svenska Handelsbanken v. Carlson* (1966) 에서 원고는행은 매사추세츠주의 주민을 상대로 스웨덴법원이 내린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연방법원은 매사추세츠법에 의하여 *Erie*사건에서 정립된 원칙에 따라 스웨덴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였다.⁹⁾ 또한, *Sompotex Ltd. v. Philadelphia Chewing Gum Corp.*(1971)에서는 영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이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필라델피아법에 의하여 그 판결이 다소 신의가 의심되고 변호사비용을 포함하는 등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정해지는 등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곧 필라델피아법의 강한 공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영국판결을 승인하였다.¹⁰⁾ 미국의 “統一 外國金錢判決 承認法”(Uniform Foreign Money - Judgments Recognition Act, 1962)도 상호주의를 배제하고 타주의 판결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판결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3. 外國判決의 意義

國際私法上 外國判決이란 涉外的 私法關係에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권한 있는 司法機關이 내린 確定判決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회교국들의 종교기관의 판결이나, 商事關係를 다루는 특수법원인 외국의 상사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사법관계를 다루는 행정판청이 내린 결정도 포함된다. 반드시 판결이란 표제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며, 우리나라 법이 요구하는 판결의 형식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국이 요구하는 형식만 갖추면 된다. 외국 판결의 범위에 終局判決만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으나,¹²⁾ 中間判決이라 하더라도 승인의 요건을

5) *Hilton v. Guyot*(1895), 159 U.S.113. Leflar, *American Conflicts Law*(1986), p. 250.

6) Casad, "Issue Preclusion and Foreign Country Judgments ; Whose Law ?" 70 *Iowa L. Rev.* (1984), p. 53.

7) *Erie R. R. v. Tompkins* 304 U.S. 64(1938).

8) 제 2리스테이트먼트 제 98조도 동일하게 규정함.

9) *Svenska Handelsbanken v. Carlson*, 258 F. Supp. 448(D. C. Mass. 1966). William C. Sturm,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95 *Commercial L. J.* 2 (1990), p. 201.

10) *Sompotex Ltd. v. Philadelphia Chewing Gum Corp.* 435 F. 2d 435(1971). Leflar, op cit, p. 252 ; Sturm, op cit, p. 207.

11) 13 U. L. A. 263 (Master Edition) (1986).

충족하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제외되지 않는다.¹³⁾ 和解調書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¹⁴⁾ 仲裁判定의 效力은 法院의 判決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약과 법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므로 후술하기로 한다. 외국판결의 존재에 관해서는 승인이나 집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¹⁵⁾

4. 外國判決의 承認要件

우리 민사소송법 제 203조에 의하면,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은 (i) 法令 또는 條約으로 外國法院의 裁判權을 否認하지 않을 것, (ii) 敗訴한 被告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公示送達에 의하지 아니하고 訴訟에 필요한 召喚 또는 命令의 送達을 받지 않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應訴한 일, (iii)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하지 아니한 일, (iv) 相互의 保證이 있는 일등의 조건을 구비하면 效力이 있다.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에 관해 각국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참고 삼아 예를 들면, 미국의 “統一 外國金錢判決 承認法”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i) 외국판결이 확정판결일 것, (ii)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를 것, (iii) 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iv) 피고기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를 받았을 것, (v) 판결이 사기에 의해 내려진 것이 아닐 것, (vi) 청구원인이 승인국의 공서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등이다.¹⁶⁾ 또한, 스위스 개정국제사법에서는 외국판결 승인의 거절사유로서 (i) 外國法院의 管轄의 不存在, (ii) 스위스의 公序에 어긋나는 경우, (iii) 당사자 일방이 유보없이 응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주소지법 또는 상거소법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정당하게 소환받지 않은 경우, (iv) 스위스 절차법의 본질적인 원칙에 반하는 사실, 특히 그에게 법률상의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v) 이미 스위스에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相互保證은 제외하였다.¹⁷⁾

우리나라 민소법 제 203조에 규정된 승인요건은 아니지만 과거의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는 네바다주에서 내린 이혼판결이 우리나라涉外사법이 정한 준거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예가 있다.¹⁸⁾ 그러나, 대법원은 민소법 제 203조를 文理대로 해석하여 준

12) 徐希源, 國際私法講義(1988), 112면.

13) 서울 民事地法 1982. 12. 30 선고, 82가합 5372, 7489판결.

14) 서울 民事地法 1968. 10. 17 선고 68가 620판결. 스위스 개정국제사법 제 30조.

15) 徐希源, 前掲書, 116면.

16) 미국의 “統一 外國金錢判決 承認法”(Uniform Foreign Money - Judgments Recognition Act, 1962), 제4조 ; Leflar, op cit., p. 252. 영국의 1933년의 “外國判決에 관한 相互 執行法”(Foreign Judgments Reciprocal Enforcement Act, 1933) 제 4조 (a) 참조.

17) 스위스 개정국제사법 제 25조, 26조, 27조.

거법요건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이다.

(1) 國際判決管轄權의 存在

Barti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섭외사법상 국제재판관할권은 자국의 법이 섭외사건에 대하여 관할이 있느냐는 直接的 一般管轄의 문제와 외국의 법원이 섭외사건에 관할이 있느냐는 間接的 一般管轄의 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 外國判決의 承認要件의 하나인 國際裁判管轄의 존재문제는 후자인 間接的 一般管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독법계에서는 대체로 직접적 일반관할이나 간접적 일반관할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 통설이다.¹⁸⁾ 그러나, 원칙적으로 간접관할의 기준을 직접관할과 동일하게 보지만 외국이혼판결에 있어서는 跛行婚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도 직접관할과는 달리 간접관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²⁰⁾

우리 大法院 1988. 4. 12, 85므71 判決이 후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사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이주한 夫가 한국에 주소를 둔 妻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에서 이혼심판을 받은 데에 대하여 妻가 대한민국 법원에 그 외국판결의 무효확인인 소를 제기하였다.²¹⁾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을 “涉外事件의 公正과 效率의인 解決을 위한 觀點에서 外國判決承認制度의 趣旨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주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여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이 내린 판결에 국제재판관할의 부존재를 근거로 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外國離婚判決의 承認을 위한 재판관할권의 기준은 (i) 판결국에 피고주소지가 있는 경우, (ii) 피고가 응소한 경우, (iii) 피고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도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피고의 국적 또는 상거소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과 청구원인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등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送達要件

민소법 제 203조 2호는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敗訴한 被告일 경우, 公示送達에 의하지 아니하고 召喚 또는 命命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應訴한 일을 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被告의 防禦權 保障을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18) 서울고법 1971. 5. 12, 70나 156.

19) 孫京漢, “外國判決 및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 貿易紛爭의 解決, 國際去來法研究(1992, 創刊號) 149, 150면 참조.

20) 영미법계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上揭論文, 150면.

21) 김용욱, “외국이혼판결의 승인과 민사소송법 제 203조,” 判例月報, 225호 (1989. 6) 49면 이하.

송달 일지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는 應訴에 필요한 相當한 期間을 두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하므로 해외영업소에 한 송달도 유효하다. 유보없이 응소한 경우에는 피고의 방어 기회가 주어진 것이므로 송달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에서 하는 소송서류의 送達方法에 관하여 민소법 제 176조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공관 또는 그 나라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협력을 전제로 규정한 규정이므로 國際司法共助의 協力關係가 없는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간 司法共助業務處理 등에 관한 例規 (송민예규 85-1)에 따라 국제간의 사법공조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그 내용을 본받아 1991년에 國際民事司法共助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외국으로의 촉탁은 受訴法院의 재판장이 외교경로를 거쳐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차 공무소에 대하여 하는 간접실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²²⁾ 한편,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가입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송서류등의 송달은 그 나라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에 대하여 할 것을 규정하여 직접 실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예양상 외국인에 대하여는 영사에 의한 직접 실시방식을 취할 수 없다.²³⁾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外國과 司法共助協定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을 통하여 그 나라의 외국인에게도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행은 주권침해의 문제와 함께 외국판결의 승인에 문제가 되고 있다.²⁴⁾ 한편, 國際民事司法共助法에 의하면 외국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하는 司法共助囑託은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거나 상호보증의 없는 경우에 그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외국법원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 국가의 영사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송달에 대하여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²⁵⁾

大法院判決 1992. 7. 14, 92다 2585에서는 自由中國 대북지방법원이 당시의 주한 자유중국 대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법인체인 피고를 상대로 소장파 소환장을 송달한 데에 대하여 “이는 영사파견국이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판사 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203조 제 2호의 送達要

22)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제 5, 6, 12조 참조.

23)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제 5조 j항 참조.

24) 1992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와 사법공조협정을 체결중에 있으며, 일본 및 미국과는 협의중에 있다.

25)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제 12조.

件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은 (i) 소송 또는 비송서류의 송달이 법원의 고유한 裁判事務權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ii)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은 송달은 主權侵害를 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관련된 외국판결의 승인도 거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서류등의 송달을 엄격하게 재판권행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지만, 현재 고도로 발달된 우편 통신제도의 혜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의 입법과 국제조약은 송달요건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⁶⁾ 소송서류 및 비송서류의 송달방식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이 상이하므로 이에 관한 통일법으로는 헤이그 1965년 “民事와 商事事件에 관한 소송 및 비소송 서류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65)이 있다.

(3) 善良한 風俗 및 기타 社會秩序

民訴法 제 203조 3호의 公序의 概念은 외국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公序에 어긋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형식과 절차가 공서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개념은 민법 제 103조의 국내적 공서의 개념과는 구별되며 외국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섭외사법 제 5조의 국제사법적 공서의 개념과 유사하다. 外國判決의 承認 結果가 사회적으로 도저히 容認될 수 없는 경우도 외국판결의 승인이 거부된다. 우리 판례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시 준거법인 영국의 법정이율로 계산하지 않고 고율인 미국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영국의 중재판정이 우리나라의 공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⁷⁾ 또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적법절차, 심리의 공평한 기회등 절차법상의 본질적 제 원칙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원칙에 반할 경우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相互保證

먼저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로 상호보증을 드는 것은 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과거의 입법례의 산물이다.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의 입법은 相互保證要件을 除外하거나 緩和하고 있다. 미국의 Tahan v. Hodgson(1981) 사건에서는 “相互保證은 미국의 判決執行要件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단지 그 내용이 승인국의 공서에 상반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는 경향이 있다.²⁸⁾ 독일에서도 신분에 관한 외국판결에는 상호보증을

26) 최공웅, 전거서, 319면 이하.

27) 大法院判決 1990. 4. 10, 89다카 20259. 소위 GKN International 사건으로 불리며 영국의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였다.

28) Tahan v. Hodgson 622 F.2d 862 (1981). Strum,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95 Commercial L. J. 2 (1990) p. 205.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호보증의 요건은 판결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국의 법체계에 비추어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²⁹⁾ 우리 大法院判決 1971. 10. 22 에서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내린 한국인간의 離婚審判에 대하여 “미합중국은 외국판결을 일체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증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미합중국간에는 相互保證이 없다”고 판시하였다.³⁰⁾ 그러나, 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꾸어 미국 뉴욕주 법원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相互主義의 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外國判決이 詐欺로 획득된 것이나 公序에 반한다가나 裁判管轄權의 欠缺이 없으면 외국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지적하고 뉴욕주의 톰프킨스군 법원이 선고한 이혼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승인하였다.³¹⁾ 한편, 우리 판례는 대체로 일본, 독일, 대만과는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국, 호주와는 상호보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³²⁾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최근 상호보증요건을 아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법원이 영연방국가들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승인하기를 꺼리는 부정적 입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³³⁾

5. 外國判決의 執行

(1) 執行判決의 意義

民訴法 제 203조의 요건을 갖춘 外國判決을 承認하면 그 판결은 既判力과 形成力을 가진다. 그러나, 外國判決의 執行을 위하여는 별도로 민소법 제 476조와 477조에 따라 執行判決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 履行判決 뿐만 아니라 確認判決이나 形成判決이라도 승인요건의 충족여부가 의심될 때에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執行判決을 구할 수 있다. 외국이혼판결에 대하여는 집행판결을 받지 않고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981년 대법원 호적예규 679-8(“外國法院의 離婚判決에 기한 離婚申告 處理指針” 1981. 10. 14 법정 제 545호)이 제정되어, 외국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직접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은 외국판결이 불분명하거나 효력에 의심이 있는 경우 감독법원에 질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신

29) 大法院判決 1971. 10. 22, 71다 1393.

30) 본 사건에서는 네바다주의 判決이 相互保證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는 미합중국법이 아니라 네바다주법의 外國判決의 承認要件을 살피는 것이 옳았다.

31) 대법원 1989. 3. 14, 88므 184, 191.

32) 외국판결을 승인한 예로서, 서울고법 1985. 2. 14, 84나 4043 (일본판결), 서울고법 1985. 8. 20, 84나 3733 (독일판결) 대법원 1968. 12.3, 68다 1929 (대만판결). 외국판결을 부정한 예로서 대법원 1987. 4.28, 85다카 1767 (호주 판결).

33) 同旨, 孫京漢, 前揭論文, 162-168면.

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執行判決節次

민소법 제 476조 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執行判決로 그 적법함을 선언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同條 제 2항은 집행판결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債務者の 普通裁判籍所在地”의 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제 9조에 의하여 “財産所在地”의 특별재판적의 지방법원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절차는 통상의 판결절차와 동일하다.³⁴⁾ 민소법 제 477조 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않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적 심사만을 할 뿐이며 외국판결 내용의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조 제 2항은 (i)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ii) 외국판결이 제 203조 (外國判決의 效力)의 네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訴를 却下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外國仲裁判定の 承認과 執行

1. 意義

仲裁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탁하고 그 중재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어느 편에 치우침 없이 판정을 내리는 私的 紛爭解決手段이다. 그 결과인 중재판정은 분쟁해결에 있어 終局的이며 (final) 당사자를 拘束하는 (binding) 효력을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 仲裁法 제 12조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商去來에 있어서 仲裁는 하나의 商慣行으로서 商人法 (lex mercatoria)의 발달과 함께 이미 중세부터 자주 이용되어 왔다.³⁵⁾ 국가주권주의에 기초한 각국의 실정법이 나타난 후에도 국경을 초월한 국제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는 엄격한 國內 司法節次 보다 당사자의 합의에 바탕을 둔 國際商事仲裁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에 각국의 중재법은 訴訟制度와

34) 大判 1982. 12. 28, 82므 25 (認知에 관한 外國判決에 대한 訴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35) 商事仲裁의 歷史的 發展과 주요국가의 중재법의 비교분석에 관해서는 拙稿, “商事仲裁와 商法の 發展,” 商事法研究 (1989, 제 7집) 66-82면 참조.

仲裁制度간의 긴장관계를 반영하여 仲裁判定을 實質的 司法審査의 대상하에서 인정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각국의 중재법은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⁶⁾ 또한, 최근 각국은 국내중재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국제중재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³⁷⁾ 그 이유는 첫째, 국제중재는 國內公序(local public policy)와는 구별되는 國際公序(international public policy) 하에서 국제중재판정의 유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국제중재는 중재지, 중재인 및 준거법의 지정 그리고 중재절차에 있어서 국내중재에 비해 보다 당사자 자치원칙에 의존한다는 점, 셋째,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 국내중재와는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국제중재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국제중재와 국내중재의 구별은 현대중재법학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이러한 입장에서 유엔 貿易法委員會(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제정하였는데, 최근 상당한 수의 국가가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내법에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³⁹⁾

國際仲裁判定의 효력을 인정하고 仲裁에 관한 각국의 國內法の 差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국제 협력이 있었는데, 특히 1958년에 뉴욕에서 체결된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 여기서 부터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80여개국이 가입함으로써 外國判決의 承認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우리나라도 1973. 2. 8에 商事條項과 條約국의 相互主義條項을 유보한 채 가입하여, 당 협약이 규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⁴¹⁾ 우리나라 중재법은 국제중재판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外國仲裁判定의 承認에 관한 많은 問題들에 뉴욕협

36) 前掲論文 참조.

37) 拙稿, “現代國際商事仲裁制度의 發展方向에 비추어 본 한국과 캐나다의 仲裁法 比較,” 仲裁, (1991. 6, 7) ; 拙稿, “商事 및 海事仲裁機關의 國際化方向” 國際法律經營, (1989, 가을호) 75-94면 참조.

38) 拙稿, 前掲論文, “現代國際商事仲裁制度” 26-18면 참조.

39) 1992. 6 현재, Australia, Bulgaria, Canada, Cyprus, Hong Kong, Nigeria, Scotland, 미국의 California, Connecticut, Texas 등이 채택하였고, Singapore, New Zealand 등이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Model Law의 영향을 받아 國內 仲裁法을 개정하였다.

40) 1991. 6 현재 84개국이 채택하였다. 뉴욕협약에 관한 다각적인 법률문제를 분석한 論書로서는 Albert Jan van den Berg,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1981) 참조하고 뉴욕협약에 관한 최근 각국 법원의 해석에 관해서는 매해 발간되는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의 해당란을 참고할 것.

41) 뉴욕협약 제 1조 3항 상사조항 유보와 條約국의 상호주의 조항 참조.

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외에 世界銀行 (World Bank)내에 설립된 國際投資紛爭센터 (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1965년에 제정한 “국가와 타국 민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와싱턴협약”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1965 ; “ICSID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도 체약국중 하나이므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ICSID 仲裁判定에 관해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의 問題點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外國仲裁判定은 어떻게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국제중재가 법선택의 문제와 판정의 승인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英美法系에서는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과 함께 국제사법 교과서의 범위내에서 다루고 있으며, 최근 대륙법계의 국제사법 교과서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추세이다.⁴²⁾ 첫째, 우리나라도 가입한 바 있는 뉴욕협약의 체약국내에서 행해진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이 정한 승인요건과 집행요건을 갖추면 외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⁴³⁾ 뉴욕협약에 따르면 外國仲裁判定은 원칙적으로 승인될 수 있고, 다만 當事者의 抗辯 또는 法院의 職權調查 結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承認과 執行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대다수의 주요국가들이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되었으므로 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외국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비체약국에서 행해진 경우에 우리 仲裁法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이다. 먼저, 우리 중재법 제 12조가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중재판정의 성질을 판결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외국중재판정도 외국판결로 보아 민소법 제 203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⁴⁴⁾ 또한, 중재를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수단으로 보지만 협약가입국이 아닌 나라에서 행해진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要件에 대하여 민소법 제 203조를 준용하여 條理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며,⁴⁵⁾ 國際民事訴訟法과 國際私法에 기초한 條理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⁴⁶⁾ 한편, 외국중재판정의 성질이

42) 스위스 改正國際私法 제 12장 (176-194)과 미국 Restatement II (1971) ss. 218-220에서는 仲裁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國際民事訴訟法을 국제사법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문제를 외국판결의 승인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다. 崔公雄, 前掲書, 407면 이하 ; 孫京漢, 前掲論文, 129면이하.

43) 뉴욕협약 제 3, 4, 5조 참조.

44) 金洪奎, “仲裁判定의 國籍,” 法思想과 民事法 (玄勝鍾 教授 回甲紀念 論文集) 533면.

45) 崔公雄, 國際訴訟 (1988), 413면.

46) 李鎬元,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 涉外事件의 諸問題 (下), 재판자료 제34집 (法院行政處, 1986) 697면.

국내중재판정과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중재법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⁷⁾ 이 경우에 관련 법규정이 없으므로 조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에 관한 한 외국중재판정을 외국판결과 같이 보아 민소법 제 203조를 준용하거나 외국중재판정을 내국중재판정과 같은 성질로 보아 중재법을 유추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국중재판정은 국내중재판정 보다 더 당사자 자치에 따라 행해지며, 최근 각국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국내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위 外國仲裁判정의 脫地域化 (delocalized arbitral awards) 論理 까지 주장되는 國際現實에서, 국내 민소법 203조나 국내중재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한다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 판정국에서 거절되는 경우 패소자는 또 다른 제 3의 국가에 서라도 중재판정의 승인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 타국의 법정을 전전하며 법정투쟁을 할 우려도 있다.⁴⁸⁾ 입법론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입법례와 같이 국내중재법과 별도로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⁴⁹⁾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에 관한 한 국내중재에 관한 국내법을 거론하느니 보다는 국제민사소송법에 기초한 條理法으로서 우리도 가입국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뉴욕협약”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국내민소법 203조나 국내중재법이 이러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늘 상충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이나, 특별한 경우를 위한 私見이다.⁵⁰⁾ 그러나, 뉴욕협약은 외국중재에 관한 승인과 집행의 기본적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절차적인 문제점은 국내중재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뉴욕협약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국내법 또는 그 이외의 국제조약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⁵¹⁾ 마지막으로 특별한 종류의 국제중재의 판정으로서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ICSID 중재판정에 관해서는 먼저 언급된 ICSID 와싱턴 협약 제 53조와 54조의 승인과 집행요건이 적용된다.

47) 孫京漢, 前掲論文, 169면.

48) 拙稿, “國際仲裁判정의 脫地域化理論에 관한 考察,” 判例研究, (高麗大, 1991. 12) 참조.

49) 英國仲裁法 (1950) 제 2편 35-42조 ; 프랑스 민소법(1981) 제 6편 1498-1506조 ; 독일민소법 제 1044조 (外國仲裁判定) 미국의 몇 몇주는 최근 국제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를 채택하였다. (上記註 39참조.) 미국 제 2리스테이트먼트 218-220조 참조.

50) 원래,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시 제 1조 3항의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締約國간에만 협약을 적용한다고 제한하였으나, 확대되는 국제거래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51) 뉴욕협약 제 7조 1항 참조.

3. 外國仲裁判定の承認과執行要件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外國仲裁判定の承認과執行要件에 관해서는 締約國間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며, 仲裁判정이 뉴욕협약의 非加入國에서 내려졌다 하더라도 뉴욕협약이 유추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뉴욕협약이 정한 外國仲裁判定の承認과執行要件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뉴욕협약에서 말하는 “外國仲裁判定”이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 받는 국가 이외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뿐만 아니라 그 승인과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에서 內國仲裁判定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도 포함하므로 적용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개념이다.⁵²⁾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을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시키려는 취지에서 동 협약 제 5조에 外國仲裁判定の承認 및 執行의 拒否事由를 열거하여 그 立證責任을 승인 및 집행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뉴욕협약 제 4조 1항에 외국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자는 仲裁合意와 仲裁判定の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규정한 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자에게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 등 적극적 요건을 증명할 부담을 지고,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는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인 소극적 요건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다. 뉴욕협약 제 5조 1, 2항의 요건을 간추리면, 外國仲裁判定の 승인과 집행이 拒否되는 사유로서 (i) 仲裁合意가 無効인 경우 (ii) 當事者가 仲裁에 응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iii) 仲裁人이 權限을 일탈하여 판정을 내린 경우, (iv) 仲裁人團 構成이나 仲裁節次가 적법이 아닌 경우, (v) 仲裁判정이 拘束力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vi) 중재판정의 대상이 仲裁適格을 가지지 않는 경우, (vii) 仲裁判定の承認 및 執行이 公序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들 거부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로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⁵³⁾ 또한, 뉴욕협약하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먼저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고 다시 그 집행을 구하는 국가에서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위 二重執行認許制度 (double exequatur)를 소송경제 또는 소송지연의 방지를 위하여 부정하고, 집행을 구하는 국가에서만 집행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뉴욕협약의 입법취지에 따라 大法院判決 1990. 4. 10, 89다카 20259에서 대법원은 뉴욕협약의 집행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원칙적으로 집행하려는 입장을 취하

52) 뉴욕협약 제 1조 1항, 주로 대륙법계국가들은 국내에서 행해진 仲裁判定이라도 準據法이 外國法인 경우도 외국중재판정으로 본다.

53) Van den Berg, op cit., p. 265.

었다. 당 사건은 英國法人인 GKN International Trading, Ltd (原告)와 韓國法人인 國際商事의 (被告) 런던지사 대표자를 통한 강철봉 매매계약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회사측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가 1980. 9. 17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몇차례 중재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가 쥘석인 체로 1981. 5. 1 런던에서 仲裁判定을 받았다. 그러나, 被告가 仲裁判定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영국의 중재판정을 기초로 서울 민사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였다. 一審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매매계약서상에 포함된 仲裁約款이 구속력이 없으며, 피고회사의 대표가 아닌 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983. 2. 3), 二審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제 2이유를 근거로 請求棄却하였다. (1984. 4. 9) 그 후, 대법원은 1988. 2. 9, 84다카 1003 판결에서 原審判決을 과기 환송하였으며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1988. 6. 26) 上告審에 까지 올라 왔다. 上告審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뉴욕협약상의 중재판정의 집행거절사유들을 모두 배척하고 영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였다.⁵⁴⁾ 대법원은 먼저 뉴욕협약 제 5조 1항 나호 (중재절차의 통지등 방어권보호)에 관해 이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防禦權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한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뉴욕협약 제 5조 2항 나호 (公序規定)에 관해 대법원은 당 규정은 “執行國의 基本的인 道德的 信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外國仲裁判定の 執行

뉴욕협약 제 3조 1항에 따르면, 外國仲裁判定이 承認 및 執行要件을 갖추면 일단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중재법 제 12조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승인 및 집행요건을 갖춘 외국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국제중재법을 적용한다면,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는 외국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⁵⁵⁾ 뉴욕협약 제 3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54) 判例月報 239호 (1990. 8) 56면 이하 참조.

55) 중재법 제 14조.

서로 다르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입법례와, 내국중재판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입법례등이 있다.⁵⁶⁾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재법 14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일반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정지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外國仲裁判定의 執行節次의 管轄法院은 중재법 제 17조에 따라 합의 관할의 지방법원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소법 1조 내지 22조가 적용될 것이다. 법원은 외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승인요건만 심사하고, 중재판정의 내용을 심사할 수 없다 하겠다. 외국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성립국의 관할법원에서만 가능하고 그외의 국가의 법원은 취소의 소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IV 結 論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外國判決의 承認 및 집행에 있어서 相互主義 原則을 고수하고 있으며, 外國仲裁判定에 관해서도 뉴욕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國際仲裁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으므로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본다. 물론, 최근 판례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면을 보이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하고는 있으나, 국제분쟁의 증가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立法的 措置가 필요하다고 본다.

56) 李鎬元, 前揭論文, 703, 670면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도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독일법계에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절차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비송절차의 일종인 執行認許 (exequatur)에 의하여 집행하며, 미국법하에는 중재판정의 追認判決 (confirmation)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